

#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



구 미 시

#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'20. 8. 27.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(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-40호)
- 나. 첨단 ICT 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의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,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기술자립화 형성
- 다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기관 :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- (1) 설립일 : 2005. 9. 1.
- (2) 조직 및 인원 : 1부 11본부 11실 16팀, 162명
- (3)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-5
- (4) 기관 주요사업
  - 1)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사업
  - 2)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
  - 3)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  - 4)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## 나. 사업개요

(1) 사업명 :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

(2) 사업기간 : 2021년~2030년(1+2단계)

(3) 출연금 : 금14억원

※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		
		1단계					2단계	
	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이후
계	428.58	72	57	39	29.33	31.25	40	160
국비	259.15	60	40	20	16	23.15	20	80
도비	47.83	3.6	5.1	2.7	4	2.43	6	24
시비	121.6	8.4	11.9	16.3	9.33	5.67	14	56

\* 국·도비는 각 기관에서 출연

(4) 주관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5) 수행기관 :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금오공과대학교

(6) 사업내용

1)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

① 특화분야 중심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

② 기술이전 사업화 전주기 지원

③ 기술기반 창업 지원으로 기술특화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2) 이노테크 기업육성: 네트워크 운영, 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

## 다. 근거법령

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 및 제58조의2

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
(4) 「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, 제5조

### 3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구미강소특구 지정 신청(경북도 → 과기부) : '19. 9. 27.
- 구미강소특구 지정 의결(연구개발특구위원회) : '20. 7. 27.
-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: '20. 8. 27.
- 1단계 1~5차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 : '21. 3. 10.~'26. 3. 9.
-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: '22. 6. 22.
- 22년 연차평가 우수등급 선정(과기정통부 주관) : '23. 5.
- 23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선정(과기정통부 주관) : '24. 6. '
- 2단계 강소특구 특화발전 지원 '타당'(과기정통부 주관) : '25. 5.
- 24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선정(과기정통부 주관) : '25. 7.
- 2단계 1차년도 사업 시행 : '26. 3. ~ '27. 3.

### 4. 기대효과

- 가. 유망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과 확산 및 특구 활성화를 촉진하고, 기술 - 창업 - 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
- 나. 로봇·방산·반도체 등 특화분야 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여 지역 핵심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
- 다.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·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고,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달성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예산재정과

라. 비용추계서

마.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황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“특구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(자금의 조달)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3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수익사업의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 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  - 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  - 나. 부품·소재산업
  - 다. 신성장동력산업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

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2. 문화 확산사업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보조)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# □ 「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
4. 강소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

5.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
6.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5조(강소특구 지원 사업)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과학기술 진흥 사업
2.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3.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
4.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
5. 첨단기술기업 창업·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
6.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
7.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8.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
9. 강소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 간 교류·협력 지원 사업
10.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1단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, 이를 기반으로 기술기반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육성
- 2단계에서는 특화분야 기업의 공공기술 상용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, 양적·질적 성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. 이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필요함.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단계 (2021~2025년도) 사업 세부 비용에 준하여 산정함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억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계
세출	14	14	14	14	14	70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억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계
시비	14	14	14	14	14	70

### 5. 부대의견 : 없음

### 6. 작성자 : 신산업정책과 산학지원팀 최지연(☎480-6173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
<b>총계</b>	<b>1,400,000</b>	
지역핵심기술 특화성장지원	1,18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(8개社) : 160,000</li> <li>○ 강소특구 제품개발지원 지원 (15개社) : 540,000</li> <li>○ 이전기술 기술개발 지원 (3개社) : 150,000</li> <li>○ 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 (20개社) : 30,000</li> <li>○ 지역특성화 사업 운영비 : 300,000</li> </ul>
강소특구 해외진출 지원	2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소특구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(21개社) : 90,000</li> <li>○ 해외협력(공동연구 등) 지원 : 130,000</li> </ul>

# 별첨 1

#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황

소재지	(34125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-5																	
설립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(설립)</li> </ul>	대표전화	일반 : 042)865-8800				설립주체 (주무기관)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							
			FAX : 042)865-8999															
			URL : www.innopolis.or.kr															
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73.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(* 연구단지 준공 '92.11월)</li> <li>'05.07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(특구법 시행)</li> <li>'05.0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</li> <li>'11.01 광주대구특구 추가 지정</li> <li>'12.07 특구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 (기관명칭 변경)</li> <li>'12.11 부산특구 추가 지정</li> <li>'15.08 전북특구 추가 지정</li> <li>'18.0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준정부기관 지정</li> <li>'19.08 강소특구(안산, 진주, 창원, 포항, 청주, 김해) 지정</li> <li>'20.07 강소특구(구미, 홍릉, 울주, 군산, 나주, 천안·아산) 지정</li> <li>'22.05 강소특구(인천 서구, 강원 춘천) 지정</li> <li>'23.0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(기관유형 변경)</li> </ul>												기관형태	기타공공기관				
인원현황	구분	계	임원	직원														
				일반정규직						상용정규직				비정규직				
				소계	일반	연구	전문계약	별정	기능	기타	소계	청경	무기계약	기타	소계	기간제	단시간	기타
				정원	170	1	157	157			-	12	-	12	-	1	1	-
현원	161.25	1	150.25	150.25			-	10	-	10	-							
임원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							연락처					
	이사장	정희권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										042-865-8801					
	비상임이사	이은영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										044-202-4720					
	비상임이사	강윤진	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								044-215-7300					
	비상임이사	부하령	건국대학교 교수										02-450-3999					
	비상임이사	손재영	경북대학교 RIS 센터장										053-243-4010					
	비상임이사	김정선	동서대학교 총괄부총장										051-320-1798					
	비상임이사	장희영	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										02-2183-1622					
	비상임이사	김진상	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										02-958-5693	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구 연구성과 사업화(기술발굴 및 연계, 기술이전사업화 등)</li> <li>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 지원(창업 지원, 첨단기술기업 육성, 글로벌 지원 등)</li> <li>글로벌 환경 구축(글로벌 네트워크 구축, 정주여건 개선 등)</li> <li>특구 인프라 구축 및 타 지역과의 연계(특구개발관리 등)</li> <li>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(실증특례, 신속확인, 임시허가 등)</li> </ul>																	
자본금(원) (2023년말 기준)	설립	41,263,000,000																
채무상태(백만원) (2023년말 기준)	자산			부채			자본											
	계	유동자산	비유동자산	계	유동부채	비유동부채	계	자본금	잉여금 등									
	78,444	28,512	49,932	13,324	3,929	9,395	65,119	41,263	23,856									

소 관 부 서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신 주 선
	팀 장	이 은 아
	담 당 자	최 지 연 (480-6173)